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 단축 및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방법 변경요구권 신설〉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38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금지급기한 단축	3
2.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방법 변경요구권 신설	7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4. 2.
- (3) 회 부 일 : 2025.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을 납품·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을 받아 납품·입점업체에 40일 ~ 60일까지 정산을 지연시키고 대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어려움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정당한 수익 취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자는 대기업 매장임차인에게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공받아 매출액을 확인한 후 매출액에 연동되는 판매수수료만 지급받

고 있음. 반면 중소기업인 매장임차인에게는 판매수수료 산정에 필요하며 매출대금을 전부 입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40여일동안 운용하다가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고 있음. 이처럼 판매대금 정산방식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당한 차별이 존재함.

더욱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현금 운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선입금한 매출대금을 판매수수료 정산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매장임차인들은 매출대금의 선입금을 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됨. 「민법」 제536조제2항은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매장임차인이 이러한 항변을 원용하여 매출대금 선입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

Ⅲ. 검토의견

1. 대금지급기한 단축

-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 ----- ----- ----- <u>10일</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30일</u>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한 후 정산하여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거래 형태인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¹⁾,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²⁾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품판매대금(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 지연에 따른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법률에 규정하였지만, 납품 이후 최장 70일³⁾ 동안 대금 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므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참고로,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매장임대차의 상품판매대금의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5월 1일에 상품을 납품하였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5월 31일)로부터 40일을 다 채운 후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면, 납품업자는 7월 10일에 판매대금을 지급받음.

지급기한은 2011년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은 2021년 도입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내용으로, 상품의 납품 시기와 대금의 지급 시기의 간격을 줄여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의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의 지급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부과⁵⁾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매마감·정산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4)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업계의 거래관행,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실태 및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대금 지급기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진행 중인 대금 지급기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후 적정 대금 지급기한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이 상품판매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매출액에 비례하는 정률의 임차료 산정에 필요한 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임차료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장임대차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함⁷⁾.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

○ 매장임차인이 지급하는 임차료 등의 형태는 양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한 후 월 임차료, 관리비 등을 정산한 금액을 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매장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함⁸⁾.

□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부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에 정산방식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⁹⁾.

□ 이에 개정안은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매장임차인이 상품 판매대금을 직접 받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산정된 임차료 등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9)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 “1월 매출 정산 차등 지급 말라”」 (조선비즈, 2025. 3. 11.)

“입금 먼저”vs“못 믿겠다”...홈플러스, 이번엔 입점업체와 기싸움」 (헤럴드경제, 2025. 4. 9.)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장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회생절차 등이 개시되어 매장임차인이 상품판매대금의 정산방식을 개정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고,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납품업자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매장임차인이 상품판매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이 상품판매대금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먼저 수취하도록 강제하는 등 정산방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정산방식 변경 요구권만을 신설하는 것을 신중할 필요가 있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다수의 매장 임차인들이 일시에 정산방식을 변경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매장임차인의 사업 영위 및 기본 판매대금

회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